| 의 안 번 호 | 제100호 |
|---|---|
| 의결 년월일 | 2017. 12. 07. |

#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17일, 구본선 의원 외 4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17년 11월 17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17년 12월 07일, 제1차 운영위원회

## 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김만중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'의정활동비'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

⇒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– 1006(2017.10.31.)호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구금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### 나 주요내용

가.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(안 제9조)

나. 안 제9조(준용규정)를 안 제10조(준용규정)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